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최근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로 함

3. 주요내용

공탁금 이자를 연 1천분의 1로 함(안 제2조)

4.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u>연 1천분의 5</u> 로 한다.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u>연 1천분의 1</u> 로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880